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Releases Countries' Varied Approaches to Global Tax Reports\(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4 pg. 30\)](#)

#### **OECD 국가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조세 보고서 접근법 수립**

OECD는 25개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2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국제적인 조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해당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익 이전에 반대하는 프로젝트에 서명한 국가들을 나열하고 이 프로젝트 지침 하에 허용되는 대체 접근법만 포함하였습니다. 국가별보고서(CbCR)로 알려진 이 국제적인 조세 보고서는 OECD 15 액션 계획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막기 위해 가장 널리 채택된 정책입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에 대해 정부가 이익 및 법인세비용 등의 기업의 재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접근법 목록**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12 March 2018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미국, 룩셈부르크 및 다른 14개국은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접근법 목록을 요구합니다.

이 접근법은 인수, 합병, 분할 및 1년 이하의 사업연도에 대한 상황도 다룹니다.

접근법의 목록에 나열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건지, 홍콩, 중국, 아일랜드, 맨 섬,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및 미국입니다.

OECD 는 또한 총 연결 매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기밀성, 적합성 및 일관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도의 실패를 보이는데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별보고서 지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 **잠재적으로 유해한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OECD 가 2 월 8 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바베이도스가 OECD 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고 본 두 가지 세금 정책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유해한 조세관행에 대한 OECD 포럼은 2017년 특혜 정책에 관한 보고서 중 바베이도스의 국제 사회 금융 서비스와 외환 수입에 대한 신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OECD 는 캐나다가 FHTP 기준에 어긋나는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럼은 캐나다의 국제 금융 센터 정책을 2004 년 진행 보고서에는 “잠재적으로는 유해하나 사실상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과거 제한적으로 FHTP 지침에 부합했던 해당 지침을 현재 폐지하였습니다.

#### **HMRC publish updated MAP Statement of Practice and associated guidance**

##### **영국 국세청(HMRC), 상호합의절차(MAP) 실무지침 및 관련 최신 안내 자료 발표**

HMRC 가 발표한 최신 실무지침(“Statement of Practice”)과 MAP 가이드라인은 영국 납세자들에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018 년 2 월 20 일, HMRC 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 “MAP”)에 대한 기존의 Statement of Practice 1 (2011)을 개정한 새로운 Statement of Practice (Practice 1 (2018))를

발표하였습니다. Statement of Practice 는 2018 년 2 월 1 일에 시행된 HMRC 의 개정 된 MAP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OECD 의 BEPS (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계획과 OECD 의 MAP 검토 관련 권장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BEPS 최종 보고서의 Action 14 (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에는 프로세스 접근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OECD 는 개별국가의 MAP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련의 다자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6 년 12 월에 진행된 첫 번째 검토 대상이었으며, 2017 년 9 월 OECD 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최신 가이드라인은 HMRC 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영국은 영국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과 주요 거래 상대방 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MAP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의 검토는 일부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영국이 MAP 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외사항들은 BEPS 다자기구(Multilateral Instrument, 이하 "MLI")의 도입으로 인해 해결되었으며, 영국은 또한 MLI 에서 다루지 않는 조약을 양자 간에서 개정 할 계획입니다.

새로 개정된 MAP 가이드라인은 BEPS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자간 검토 평가를 통해 발견한 약점을 해결합니다. 이는 HMRC 와 납세자가 세무 조사 합의 후에도 HMRC 는 MAP 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가 검토 평가를 통해 일부 납세자는 세무조사 합의 후에는 MAP 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MAP 을 신청하지 않는 듯한 경향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브렉시트 및 이전가격 조정을 납세자 스스로 한 경우의 MAP 의 입장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HMRC 가 브렉시트에 비추어 EU 납세자의 EU 중재 조약 (EAC)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지만, EAC 하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사례에 대한 지침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허나 양국 간 조약에 의한 중재가 확산됨에 따라 EAC 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OECD 모델 조세협약 주석서 제 25 조 (제 14 항)에서 "일방 또는 양방 과세당국 국가 간"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전가격 조정을 납세자 스스로 한 경우에도 HMRC 는 다른 관련 국가와 MAP 를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HMRC 의 수많은 견해 중 하나일 뿐이지만, 각 사례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HMRC 가 MAP 프로그램에 납세자가

조정된 사항을 언제 받아들일 지에 대한 독점적인 표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정된 Statement of Practice 및 관련 가이드라인은 많은 강제 중재의 상황에서 MAP 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BEPS 이후 세계에서 국경 간 논쟁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납세자에게는 단일 세제를 제공할 효과적인 조약 기반 분쟁 해결 프로세스로 기대됩니다.

### India: APAs on treatment of advertising, marketing, and zpromotion expenses

#### **인도, 광고선전비를 다루기 위한 사전승인제도(APA) 체결**

직접세 중앙위원회(CBDT)는 광고, 마케팅 및 판촉비용(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 이하 "AMP")의 처리를 다루는 두 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APA는 AMP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APA이며, 마케팅 로열티 및 기술 로열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해당 APA를 통해 인도 세무 당국은 단조로운 거래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AMP의 처리는 여러 고등법원과 중재 법원이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도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이전 가격 문제 중 하나이며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APA는 AMP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 제기가 가능한 다른 납세자들에게 좋은 징조입니다. 이 APA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였으며, 거래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이었습니다.

#### **KPMG 의견**

인도 APA 프로그램은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이전가격 분쟁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소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APA 당국이 채택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법 덕분에, 많은 납세자들이 장기간의 소송 대신 APA 경로를 통해 협상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쌍방 및 다수의 일방적인 APA 가 빠른 속도로 체결됨에 따라 APA 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으로서 인도 납세자들에게 가장 신뢰받을 것입니다. 각

납세자에 대한 AMP 논쟁에 대한 구체적인 APA 결의안은 고유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 Singapore: Expanded transfer pricing rules

### 싱가포르, 이전가격 규정 확대

2014년 10월, 싱가포르 소득세법(Singapore Income Tax Act, 이하 "SITA") 제 34조의 이전가격에 관한 입법 요건이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SITA 제 7조(1)에 의거하여 소득세 규정 2018 (이전가격 문서화)가 도입되었으며, 이전가격 지침서에 관한 IRAS의 e-tax guide의 제 5판도 소득세 규정과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 제 34조 추가된 사항

다음은 SITA의 제 34조에 구체화된 중요한 이전가격 개념에 대한 요약입니다.

1.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 – 제 34조는 OECD가이드라인 상의 독립기업원칙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본 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특정 특수관계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가 처한 조건과 다른 경우, 납세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공제액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거래 성격의 재분류(Recharacterisation)** – 특수관계거래의 형태는 거래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의 D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약정을 체결했거나,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될 경우, 특수관계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거래 성격을 재분류 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당국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실제 특수관계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다른 거래성격의 경우의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하거나, 또는 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추가 세금(Surcharge)** – 제 34조의 E는 2019 사업연도부터 IRAS가 이전가격 조정 금액에 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금액 원금에 부과됩니다. 즉, 납세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관계없이 해당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조정된 금액 자체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SITA의 제 95조와 제 96조에 의거한 기타 벌금 또한 계속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제 34조의 F는 2019 사업연도부터 특정 면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를 구비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제출 기일까지 작성되어야 하며, 2018 소득세법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명시된 항목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
5. **불이행에 대한 벌금(Fine for Non-Compliance)** – 납세자는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고 IRAS에 제출해야 하며, 제 34F조 및 기타 여러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2018 소득세법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이 규정은 2019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이전가격 문서의 형식과 내용 및 앞서 언급된 일부 예외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는 해당 규정의 두 번째 항목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 특수관계거래의 흐름과 본질, 거래구조에서 각 특수관계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책임과 거래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BEPS Action 13에 따른 OECD의 문서화 요건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새로운 문서화 영역, 첨부 자료 및 여러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과거 IRAS의 지침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 문서 작성 완료일을 명시해야 하므로 제 34조의 F(5)(a)항의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세부적인 이전가격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다양한 면제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총 매출, 또는 특수관계자의 거래량이 하한가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수입 누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및/또는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납세자의 수익성이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된 경제 활동 및 가치 창출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이전가격 및 관련 문서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 법안은 기존의 이전가격 지침을 확대하고 SITA를 통해 공식화합니다. 이전가격 규정 준수 및 관행을 타진하기 위해 조정에 대한 5%의 추가 세금과 규정 불이행에 대한 10,000 달러의 벌금이 기존의 제 95조 및 제 96조의 벌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거래 성격의 재분류를 포함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전가격 규정 시행에 있어서 엄격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납세자는 각 특수관계거래 유형에 대해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를 적시에 구비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사항들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